**(이하 “갑”이라 한다) 와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판매자 지급대행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는 판매자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관련 결제대금을 “을”이 “갑”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직접 판매자에게 지급함에 따른 양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판매자 : “갑”의 사업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

2. 지급데이타 :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갑”의 수수료 및 “을”의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각각의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내역을 “갑”이 정리하여 “을”에게 제공한 자료

3. 지급대행서비스 : “을”이 “갑”의 지급데이타에 따라 “을”의 결제대행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잔여액을 “갑”과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

4. 관리자페이지 : “을”이 “서비스”에 따른 내역 및 자금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판매자용 웹사이트

5. 자금현황 : “을”이”서비스”에 따라 지급한 판매자 지급금액과 “갑”과 “을”의 수수료 내역을 정리한 자금흐름에 대한 현황표

6. “갑”의 수수료 : “갑”이 판매자들과 기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결제대금으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금원

7. “을”의 수수료 :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8. “을”의 결제대행수수료 : “갑”과 “을”간에 기 체결된 INIpay 이용계약서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 시 “을”이 선공제하는 약정 수수료

**제 3 조 [각 사의 역할과 책임]**

1. “갑”의 역할과 책임

① “을”에게 자금지급 대상인 판매자의 상호, 판매자ID, 계좌정보 등(이하 “정보”라 함) “서비스”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

② 본 조 제1항 제①호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정보” 변경 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

③ “을”에게 정확한 지급데이타(판매자 상호, 지급액, 계좌정보)의 제공(해당 정보의 오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음)

④ 지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판매자"가 7일 합산 1천만원 이상 지급 받을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에 따라 임시로 지급이 중단되며, “판매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따라 고객확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2. “을”의 역할과 책임.

① 판매자에게 “갑”이 제공한 지급 데이터(판매자 상호, 지급액, 계좌정보)에 따른 “서비스” 제공.

② 판매자에게 “서비스” 내역에 대한 결과(거래 실패 건에 대한 원인내역 포함) 제공.

③ “갑”에게 자금현황 정보제공

3. 공동의 역할과 책임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추가 변경 및 수정 등 요청사항 발생시, 관련 일정 및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양 사 별도 협의 후 진행키로 한다.

**제 4 조 [업무처리]**

1. “을”은 “갑”에게서 전달 받은 지급데이타를 기초로 은행계좌 실명 확인을 거쳐 실명이 일치된 건에 한해 익영업일에 판매자의 각 계좌로 지급한다.

2. 전항의 지급행위 전 “을”은 “갑”의 수수료 및 “을”의 결제대행수수료를 선공제키로 한다.

3. “을”은 “갑”이 전달한 지급데이타에 따른 “서비스” 이행 시 발생한 지급 실패 건에 대해서는 이를 “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상의 가맹점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갑”에게 안내하고 해당 건은 자금현황의 출금금액에서 제외한다.

4. 상기 1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이 전달한 지급데이타의 총지급액이 자금현황의 잔액보다 많을 경우 “을”은 지급행위를 중지하고, 잔액이 지급데이타의 총지급액과 동일 혹은 이상으로 확보되면 지급행위를 진행한다.

**제 5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의무]**

① “갑”과 "을"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한다.

② "을"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자"의 신원정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③ "판매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받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을"은 서비스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④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을"은 정산지급을 임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⑤ 본조 제3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귀책에 의해 지급대행이 불가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6 조 [수수료]**

계약 수수료 및 조건은 부칙에 따른다.

**제7 조 (기타)**

본 특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의 20  년  월   일자 체결된 “INIpay 이용계약서” 내용에 따르며, “INIpay 이용계약서”와 본 특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이 우선하며, “INIpay 이용계약서” 종료 시 본 특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 --- | --- |
| **(갑 : 이용자)**  | **(을 : 제공자)** |
| 법인/개인사업자 (기재 또는 법인명판)상 호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KG타워 14, 15층 ㈜케이지이니시스 |
| 대표이사 이 선 재 (인) |

**부 칙**

**1. 수수료(부가세별도)**

|  |  |  |
| --- | --- | --- |
| **구 분** | **수수료** | **비 고** |
| 송금 수수료(정액제) |       원 |  |
| 송금 수수료(건당제) |      건 ~       건     원     건 ~       건     원     건 ~       건     원     건 ~       건     원 | 구간 별 건당 수수료 적용 |

1. 송금 수수료 : “갑”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을”의 “제휴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됨으로 발생하는 비용
2. “서비스”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총액을 익월 “을”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을”의 지정된 수수료 정산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3. “갑”이 이용하고자 하는 수수료 구분 선택

**2. 지급데이터 송신방법**

|  |  |  |
| --- | --- | --- |
| **이용방법** | **사용여부** | **비 고** |
| 상점관리자페이지 |  (       ) |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지급데이터 송신 |
| 지급대행API | (       ) | 별도 API를 통한 지급데이터 송신 |

* 1. “갑”이 이용하고자 하는 방식 선택(중복선택 불가)

**3. 수수료 정산 계좌**

1. 수수료 정산을 위한 “을”의 수수료 정산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  |  |
| --- | --- | --- |
| **은행명** | **사용여부** | **예금주** |
| KEB 하나은행 | 177-910007-21604 | ㈜케이지이니시스 |

1. “을”은 수수료 정산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사업자번호 :**

**\* MID :**